

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운영 안내

※ 주요 학사일정은 '학교 홈페이지>대학생활>학사정보>학부 학사일정'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1. 수업 운영 지침

1) 기본 방침 : 대면수업 전면 실시

2) 코로나 확진 시 수업 운영

[교강사 확진 시]

- ① 마스크 착용 후 대면 수업 진행
- ② 증상 악화에 따른 출강 불가시
 -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(ZOOM) 수업 가능(확진일 포함 최대 5일)
 -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 수업 불가 시 휴보강 신청 후 보강 진행

[학생 확진 시]

- ① 확진자 5일간 등교 중지 권고 (등교중지 권고 기간 중이라도 마스크 착용 후 출석 가능)
- ② 코로나 확진 증명서 또는 보건당국 확진 문자 제출시 유고결석 인정 (확진일 포함 최대 5일)
- ③ 코로나 확진에 따른 유고결석 학생 대상 화상강의 실시간 송출 및 녹화 영상 미제공

※ 학기 중 방역 상황에 따라 운영 방식 변경될 수 있음

2. 성적평가 방식

상대평가	절대평가 (규정에 정해진 과목에 한해 가능)	P/F
A 최대 50%까지, B~F 제한 없음	A~F 제한 없음	P or F

- 1)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난이도에 따라 성적이 부여되며, 부당한 등급상향 요구는 불승인 처리됨
- 2) 상대평가인 과목도 최종 상대평가 대상인원이 10명 미만이면 절대평가로 적용됨
(개강 15주차 기준, 수강생 중 장애학생/ 학점교류생/대학원생은 절대평가 대상인원임)

3. 시험운영 방식

- 1) 과목별 시험 시행 여부와 방법은 강의계획서에서 확인
- 2) 추가시험 해당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 전후 1주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추가시험 응시 가능
추가시험은 해당 시험 1주일 이내에 실시하며, 그 과목의 최종성적은 A-까지로 제한

4. 헤이영 출석부 이용 안내

- 1) 앱 사용 매뉴얼 : 학교 홈페이지 > 대학생활 > IT 서비스 > 스마트캠퍼스 > 헤이영캠퍼스 숙명
가. 강의실 출결은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반드시 핸드폰을 소지하고
입실하며, 핸드폰 분실 혹은 출석부에 출석이 누락된 경우 수업시간 내 담당교수에게 출석 확인
나. 과목별 출결에 관한 문의는 강의계획서에 공개된 교강사 이메일로 요청
다. 유고결석신청은 헤이영출석부에서 과목별로 신청

라. 생리공결 신청가능 대상일은 **개강일부터 학사일정에 공지된 기말고사 직전일까지** 가능

(예) 규정상 생리공결일 포함하여 4일 이내 신청 가능함으로 기말고사 직전일 6/7 생리결석을 한 경우 6/10 자정전까지 헤이영출석부에서 신청해야 이후 신청권리는 소멸됨

2) 수업형태별 출석인정기준

출결 방식	강의실(비콘)	스노우보드	
		화상강의(zoom)	강의영상(녹화영상)
출석반영시점	즉시	수업 진행 다음날부터 결과 확인 가능	매 주 금요일(한 주차 시작일)부터 이전 주차 출결 여부 결과 확인 가능

3) 코로나 대응 출결 관리 기준

업무순	조치내용
신고하기	- 학교 홈페이지 > 재학생 > COVID-19 > 대학에 신고하기
수업참여 혹은 유고결석 신청	- 확진 학생은 수업참여 혹은 유고결석 중 선택 유고결석(신병) 신청시 헤이영출석부에서 과목별로 신청함 - 제출 증빙 : 보건당국 통보 문자 화면 캡처

4) 유고결석 사유별 기준 **[강의형태가 대면인 경우에 한함]**

- 학칙시행세칙 제28조에 의거하여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헤이영 출석부 앱에서 과목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요청하면 출석으로 인정(유고결석 처리)할 수 있습니다.

출석인정사유	구체적 기준	비고
1. 신병	① 등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고의 경우(2주 이내 결석만 인정함) *진단서, 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 제출 ②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판단한 기간 (제1군~제4군 전염병/콜레라, 장티푸스, 간염, 일본뇌염, 수두, 홍역, 결핵, 독감 등)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※ 코로나19 대응 출결관리 (2023.06.01.부터 적용) - 확진 학생 발생 시 5일간 등교중지 권고 1) 확진자가 원할 경우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 참여 가능 2) 확진자가 유고결석 처리를 원할 경우 여타 신병 결석과 동일하게 헤이영을 통해 증빙 제출 및 유고결석 신청 (단, 해당 학생에 대하여 교강사가 대체 강의를 제공할 의무 없음) - 교내 코로나19 관련 신고(확진 시) : 학교 홈페이지 > 재학생 > COVID-19 > 대학에 신고하기 </div>	신청 및 승인 (헤이영 캠퍼스)
2. 직계가족사망	①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7일(휴일포함) ② 조부모 사망 시 3일(휴일포함) *사망진단서 제출	
3. 교육실습	교원양성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에 의함	

출석인정사유	구체적 기준	비고
4.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의 조기취업	입사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용 서식에 내용 작성하여 학부(과)장, 학사팀 승인을 거쳐 최종 교강사에게 제출 * 신청조건 :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,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의 정규/채용 전환형 인턴/1년 이상 계약직 취업자(세부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 참조) * 서식: 홈페이지>대학생활>학사정보>문서양식함>출석인정신청서(조기취업생용)	교/강사에게 직접 제출
5. 그 밖의 공식 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(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)	공식행사 인정 범위 ① 학부(과)장, 행정부서 기관장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참석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② 졸업여행 및 졸업앨범 촬영일(공지사항 화면 캡처) ③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(공문확인) * 위에 명시하지 않은 공식행사인 경우 관련 공문을 확인하여 담당 교·강사가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	신청 및 승인(헤이영 캠퍼스)
6. 생리 결석	① 생리통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는 생리공결을 신청하여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② 주기별 1회/학기당 최대 4일 인정되며, 생리공결일을 포함하여 4일 이내 신청해야 함	
7. 백신 결석(코로나대응기간 한시 적용)	별도 백신 접종 공결은 인정하지 않음 단,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여타 신병 처리 기준에 준하여 증빙 제출 및 유고결석 신청 가능	